

# 條例案審查報告書

-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조례안
- 충주시 증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충주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總務委員會

# 조례안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제안내역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06.12.07	2006.12.07	2006.12.13	2006.12.13	기획감사 과 장
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	"	"	"	"
충주시 수안보 인공암 벽장 관리 운영 조례안	2006.11.28	2006.11.28	2006.12.08	2006.12.15	문화체육 과 장
충주시 증원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	"	"	2006.12.15	"	관광과장
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	"	2006.12.08	2006.12.08	환경과장
충주시립도서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"	"	"	"	도서관장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) 제안이유

-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체 유치 및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을 위한 기구 신설과 운영상 불합리한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부서 신설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) 주요내용

- 국 명칭 변경
  - 문화관광복지국 ⇒ 주민생활지원국(안 제7조)
- 부서(과) 조정
  - 폐지 : 투자유치지원실(안 제4조)
  - 신설 : 주민생활지원과(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안 제7조)
- 과 명칭변경
  - 주민자치과 → 자치정보과(안 제5조)
  - 지적민원과 → 종합민원실(안 제5조)
  - 재난안전관리과 → 재난관리과(안 제6조)
- 국 소관 업무분장 변경(안 제5조 및 제7조)
  - 청소년 및 자원봉사 : 기획행정국 → 주민생활지원국
- 사업소 통합(안 제17조)
  - 문화회관관리소+공공시설관리소 → 공공시설관리소

## 나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“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” 및 운영상 불합리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### 2)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1,317명(순증 없음)
- 집행기관 정원 1,298명(변동없음)
-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조정
  - 본 청 : 545명 ⇒ 551명(증 8명)
  - 사업소 : 223명 ⇒ 219명(감 4명)
  - 읍면동 : 362명 ⇒ 358명(감 4명)
- 직급별 조정내역
  - 5 급 : 61 ⇒ 62 (+1) 주민생활지원과장 상계조정 증
  - 6 급 : 246 ⇒ 258(+12) 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상계조정
  - 7 급 : 322 ⇒ 310(-12) 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상계조정
  - 8 급 : 243 ⇒ 244 (+1) 직종조정(기능직 결원 일반직화)
  - 9 급 : 125 ⇒ 124 (-1) 주민생활지원과장 상계조정 감
  - 기능 : 245 ⇒ 244 (-1) 일반기화 감

- 한시적 운용 정원 존속기한 연장
  - 존속기한 : 2006. 12. 13 ⇒ 2008. 12. 31
  - 복식부기 : 전담인력(7급 1명, 8급 1명)
  -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담인력(7급 1명)

## 다.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설치한 수안보 인공암벽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### 2) 주요내용

- 이용료 및 이용시간(안 제4조)
  - 이용료(1일) : 평일(1,000원), 토·일·공휴일(2,000원)
  - 수강료(1주) : 10,000원
  - 이용시간(동절기는 단축운영)
    - 평일(주중 2일) : 18:00~22:00
    - 토요일 : 13:00~22:00
    - 일,공휴일 : 09:00~18:00
- 이용료의 감면(안 제5조)
  -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  -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
- 위탁운영 : 법인 또는 단체(안 제9조)

## 라.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충주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원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

### 2) 주요내용

- 재단의 명칭을 「재단법인 중원문화관광재단」으로 정함(안 제2조)

- 재단의 사업범위를 정함(안 제4조)
  - 중원문화의 전승발전과 관련된 기업
  - 지역문화관광산업과 연구개발 사업
  - 지역축제의 세계화와 스포츠레저사업
  - 문화관광과 관련된 연구개발
  -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-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  - 이사 25인(이사장, 전무이사 포함)
  - 감사 2인(이사 중1, 시공무원1)
- 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)
  -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

## 마.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대상 의무사업장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를 충주시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### 2) 주요내용

- 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”의 범위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에서 규정하던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조례에 정함(안 제2조제2호)
  -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영업

## 바. 충주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도서관 신축으로 향상된 기능을 원활히 운용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교육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

## 2) 주요내용

- 충주시립도서관의 업무범위를 정함(안 제4조)
- 부대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정함(안 제13조 및 제14조)
- 도서관내에 자원봉사자를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8조)
-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19조 등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“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” 2단계 「시군구 조직개편 지침」을 반영하고 새로 선출된 제6대 충주시장의 역점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첫 조직 개편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
- 분배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의지를 담은 “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”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과 친밀하게 접근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되며,
- 시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은 물론 일선 등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신설한 것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.
- 또한 업무 중복으로 논란이 되던 투자유치지원실을 폐지하고 총무과에 정원을 둔 시장직속의 대외협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금번 조직개편안이 행정조직의 효율성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및 투자유치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충주시의 대외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.
- 다만, 대외협력실을 조례상에 정식기구로 구성하지 않고 TF팀 형태로 시장 직속하에 둬으로써 완충기능 약화 등 비계선조직이 갖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외협력실의 업무영역과 기능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자칫 비서실 기능 확대로 비취질 우려가 있는 등 TF형태의 조직 운영에 따른 역기능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.

- 또한 그동안 명칭 문제로 혼선을 빚어왔던 지적·민원과를 종합 민원실로 누구나 알기 쉽게 바꿨으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조정하였고, 주민자치과는 전산 및 정보통신 업무를 추가하여 자치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.
- 본 조례의 개정은 당초 2007년 1월 시행예정이던 총액임금제의 시행이 대통령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지 못하고 미뤄짐으로써 총액임금제의 시행 전 단기적 조직개편안이라 볼 수 있으며
- 기존 조직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 시정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이라 판단됩니다.

#### 나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“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”에 따른 조직개편안에 따라 이를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.
- 정원총수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일선 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로 5급 1명과 6급 12명은 증원되고 이에 상응하게 하위 직급에서 상계 감원하여 정원총수는 변동없이 개편되는 행정기구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.
- 그리고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던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 등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운용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행정조직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판단됩니다.

#### 다.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금년 8월 완공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, 이용시간, 위탁운영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

-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(평일 09:00~18:00, 토요일 09:00~13:00)에는 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18:00이후 이틀만 개방하게 됨으로써
- 평일에 동 시설을 이용하려는 관광객 및 단체이용자 등의 불만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.

#### 라.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본 조례로 설립하고자 하는 “중원문화관광재단”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써 법인의 설립인가, 정관작성, 임원선출, 이사회 운영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“재단법인”이라 하겠습니다
-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출연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설립을 위한 재정을 지원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여진 “기관”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
- 이로 인해 본 법인은 민법 단독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과 달리 “공익법인”의 성격이 강하다 하겠습니다.
- 조례안 제3조는 본 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으로써 이를 근거로 재단의 사업, 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, 사업계획의 제출, 결산 및 경영상황 검사·감사 등 법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독점적 권한과 감독권을 부여한 것은 입법기술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원문화재단법인에 대한 적법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그 동안의 지원근거 불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된 점은 참으로 다행이라 하겠으나

- 재단법인 설립 전에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재단에 출연 등의 재정 지원을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.
- 다음으로, 입법기술상 조례의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조례의 시행일과 조례 시행에 수반되는 경과조치, 그리고, 그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하는 부분이며
- 특히, 과도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과조치의 경우에 조례 제·개정 전의 기득권자의 권리 또는 지위를 보호하거나 조례로 인한 급격한 변화나 혼란을 막기 위한 완충기능으로써 부칙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- 이러한 점에서 부칙 제3조의 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는 조례 제정 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과도적 조치로써 불가피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.
- 다만, 부칙 제4조의 행정행위에 관한 소급효를 인정한 경과조치는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으로
- 주민의 권리, 이익 침해 구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·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구체적인 사안이 아닌 일반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
- 또한, 앞선 행정행위의 위법·부당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급해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리상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.
- 따라서 제4조의 행정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#### 마.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 제2호에 “음식물류

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”으로 규정되어 있던 “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

-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정 전 시행규칙에 있던 규정 그대로를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.

#### 바. 충주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현재의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는 복사수수료, 도서 손실에 따른 변상, 도서 기증,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재의 신축 도서관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
-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에는 문화사업, 부대시설 사용료, 자원봉사자 배치,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, 도서관내의 부대시설에 국한된 사용료이지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사용료 부과에 따른 충분한 고지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#### 가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▶**질의** : 대외협력실을 TF형태로 운영하는 것과 기구화 하는 것의 차이점은?
  - 답변** : 우선 기구화 한다면 기본업무가 늘어나 인력, 예산 등이 함께 늘어나야 할 것임. TF형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
- ▶**질의** : 대외협력실이 시장 직속으로 있는 것과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것의 차이는?
  - 답변** : 업무의 능률성, 효율성을 중시하여 시장 직속으로 하였음

- ▶ **질의** : 주민자치와 정보통신을 합하여 자치정보과로 하였는데 업무의 유사성이 적지 않은가?  
○ **답변** : 기존에 있던 총무과의 기능이 너무 커서 효율성이 떨어져 적합하지 않지만 합쳐 1과로 하였음
- ▶ **질의** : 여성회관의 역할과 기능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직급을 하향 조정 하였어야 되지 않는가?  
○ **답변** : 관장의 업무능력에 따라 차이가 많음.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 직급에 걸맞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음

#### 나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▶ **질의** : “없 음”

#### 다.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

- ▶ **질의** : 인공암벽장 운영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?  
○ **답변** :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조정토록 하겠음

#### 라.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▶ **질의** : 재단에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?  
○ **답변** :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단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임
- ▶ **질의** : 재단설립의 과정에서 회계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?  
○ **답변** : 인정함
- ▶ **질의** : 행정행위에 대한 경과 조치로 앞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가?  
○ **답변** :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편의적으로 두었음
- ▶ **질의** :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은?  
○ **답변** : 통과되지 않으면 재단이 운영될 수 없음
- ▶ **질의** : 재단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되는가?  
○ **답변** : 시에서 지원하게 됨(수정예산에 계상)

#### 마.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▶ **질의** : “없 음”

## 바. 충주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▶질의 : 외국어 등의 교육 근거는?  
○답변 : 향후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코자 함
- ▶질의 : 타 시·군에서도 유료로 시설을 개방하는가?  
○답변 : 유료로 시설을 개방하고 있음
- ▶질의 : 도서관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는가?  
○답변 : 연계되어 마일리지를 제공받게 됨
- ▶질의 : 사용료 부과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?  
○답변 : 그동안 부대시설 이용자에게 설명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임

## 5. 심사결과

- 가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나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다.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 : 원안가결
- 라.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안 : 수정가결  
(시 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과 행정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는  
부적합하므로 안 제9조 제2항 제1호와 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함)
- 마.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바. 충주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## 6. 붙임

- 가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나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- 다.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 1부
- 라.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안 1부
- 마.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바. 충주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